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도서30310-543	전화:	시행항 특별취급
보통기간	영구·순영구. 10.5.3.1.	시 장	
수신처 보존기간			
시행일자	90. 12		
보조기관	도시계획국장 전경	검 조 기 관	통 제
	도시계획과장		
	지역계획과장		법무담당관 김자철 업종통제관
기안책임자	조성일	발 송 인	
상 수 처 장 소	과 안 참 조		
제 목	도시계획 주차장정비지구 실요 및 결정(고시)		
〈 제 1 안 〉			
수 신 내 부 결 재			
제 목 같 은 건			
1. 우리시 도시계획 주차장정비지구 결정우 2년이내 지적승인 미이행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여 도시계획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요고시 하고			
2. 도시계획 주차장정비지구 지정기준에 의거 우리시 도시계획 사항에 부합하도록 그 면적을 조정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코자 합니다.			
			3112

3. 본건 도시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90.12.14) 상정 심의 가결된

사항입니다.

가. 주차장 정비지구 실효 및 결정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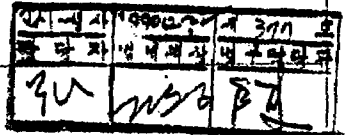
구분	도시계획	위 치	면적(㎡)	비 고
실효	주차장 정비지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중 부치지역, 개발제한구역, 전용 주거지역, 공차지구, 공영물 제외한 지역	295,555,905	
결정	"	위와 같음	297,324,483	

첨부 : 관련서류 1부. 끝.

< 제 2 안 > 고 시 안

서울특별시 고시 제 421 호

도시계획 주차장정비지구 실효 및 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주차장정비지구가 건설부 고시 제407호(87.8.29)

로 결정된후 지적승인 기간 도과로 인하여 결정후 2년이 되는 다음날로 실효되었기

도시계획법 제1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실효고시 하며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주차장정비지구를 도시계획법 제1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결정 하였기 같은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과천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0. 12

서울특별시

가. 도시계획 주차장정비지구 실효 및 결정포시

구분	도시계획	위 치	면적(㎡)	비 고
실효	주차장 정비지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구역중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전용주거지역, 풍치지구, 공원을 제외한 지역	295,555,905	
결정	"	위와 같음	297,324,483	

나. 관계도시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관할시 도시과 및지도면과 같음. 끝.

< 제 3 안 >

수 신 건설부장관

제 목 같은건

1. 우리시 도시계획 주차장정비구역을 도시계획법 제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별첨과 같이 실효 고시하고, 같은법 제1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별첨과 같이 결정고시 하겠기 보고합니다.

첨부 1. 고시문 사본 1부

2. 관계도면 1부. 끝.

< 제 4 안 >

수 신 총무처장관

3114

제 목 **합동개발**

1. 다음과 같이 관보 게재 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게재구분 : 고시

나. 게재근거 : 1) 도시계획 주차장정비지구 **설요 및 결정**

다. 근거법규 : 1)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4조 및 **에도 시행령 제6조**

첨부 : 고시문 사본 2부. 끝.

< 제 5 안 >

수 신 **정보관**

제 목 **시보 게재의뢰**

1. 다음과 같이 시보 게재의뢰 하오니 조치 바랍니다.

"**제5안 가항 - 다항 이기시행**"

첨부 : 고시문 사본 1부. 끝.

< 제 6 안 >

수 신 **수신처 참조**

제 목 **같은건**

1. 우천시 도시계획 주차장정비지구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설요 및 결정**

고시 하시기 통보하시 일반인에 알람, 도면징리 및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제1안 도시계획**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2. 아울러 도시계획법 제13조에 의한 지적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결과를

보고(통보)하기 바람(바랍니다)

첨부 : 1. 고시문 사본 1부

2. 관계도면 1부. 끝.

수신처 : 서구 1-22(참조 : 도서정비과장), 과천시장

< 제 7 안 >

수 신 수신처 참조

제 목 같은건

1. 우리시 도시계획 주차장정비지구를 별첨과 같이 실효 및 결정 하였기

통보 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고시문 사본 1부. 끝.

수신처 : 주택국장(건축지도과장), 교통국장(주차계획담당관), 경찰국장(교통과장).

3116

90. 10. 14

도시계획위원회의회의록
(90년도 제9차 위원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 의 결 과 요 약

- 제 1 안 도시계획 구역 변경결정 가결
-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과천시 영정구의 분리)
- 기정 701,797KM²
 - 변경 678,780KM²(감 23,017KM²)
 - 기정 제반 도시계획사항의 변경결정 포함
- 제 2 안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계획 결정 가결
- 구로구 공동 168번지의 59필지
- 면적 49,762 M²
 - 택지 33,120 M²
 - 도로 16,310 M²
 - 어린이공원(놀이터) 332 M²
- 제 3 안 교육 및 연구지구 변경결정 보류
- 관악구 신림동, 봉천동 일대
(서울대 주변)
- 기정 4,191,000 M²
 - 변경 3,760,400 M²(감 430,600 M²)
- 제 4 안 주차장 정비지구 결정 가결
-
-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중 녹지지의 개발제한 구역,
전용주거지역, 풍치지구, 공원을 제외한 지역
- 면적 297,324,483 M²

의안번호	제	의
의안명	19 (제회)	

의결사항

~~도시계획위원회 (주거정영특지구) 행정위원회의결사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

제출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19

國報日報

서울특별시 공고 제577호

도시계획안 공람공고

1. 우리시에서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입안 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종합 제18조의2 및 종합 시행령 제1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입안에 반영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시를 공람합니다.

2.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다음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기간 : 90년 11월 17일 - 90년 12월 1일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다. 관련도시 : 공람장소 비치도면과 같음

1990년 11월 17일

서울 특별시장

○도시계획입안내용

구분	도시계획(안)	위 치	유 모 비 고
도시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 계획구역내 구역에서 실시할 예정 구역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기정 701,797㎡ 면적 678,780㎡	기정 제반 도시계획 사항의 변경 (간접, 직접, 변경 포함)

도시주최장 정비
도시주최부 결정
의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정책:
구역내 도시 지역 가 297,027,455㎡
면적중 구역, 전유권, 계획면 도시지역, 공람장 제외할 지역

社址: 市街·廣實·人間
發行·編輯 趙 錫 祐
主 筆 洪 性 燾
編輯局長 安 奎 用
서울電話對本報室 16-4921-11P

代 表 部 內	705 - 4114
政 治 部	705 - 4321
經 濟 部	705 - 4331
社 會 部	705 - 4341
新 聞 部	705 - 4815
監 報 部	705 - 4854
配 送 部 內	705 - 4855

購 報 料 月定 4,000원
1 日 1 日 200원

本 報 代 理 處 爲 凡 購 報 必
二 日 一 日 購 報 必 須 手 續 妥 當

世界日報

서울특별시 공고제577호

도시계획안공람공고

1. 도시에서 도시계획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입안 한 도시 하부 도시계획안에 관하여 해당 제1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이종 입안의 반영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하고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합니다.
 2.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주민은 청담기간내 의견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가. 청담기간 : 1990년 11월 17일 - 1990년 12월 1일
 나. 청담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다. 방문도서 : 청담장소 비치도면 및 청담
 1990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청

○ 도시계획인민회의

구	도시계획(안)	위치	규모	비고
1. 서울특별시	도시 하부 도시계획안	서울특별시	기장 70, 797	기원 제반 시설
2. 서울특별시	도시 하부 도시계획안	서울특별시	기장 267, 780	도시 하부 시설
3. 서울특별시	도시 하부 도시계획안	서울특별시	기장 23, 017	도시 하부 시설
4. 서울특별시	도시 하부 도시계획안	서울특별시	기장 139, 324, 485	도시 하부 시설

發行人 郭 慶 業
 編輯人 金 贊 壽
 印刷人 金 贊 壽
 社址 釜山 廣安路 140-013
 電話 7994-114
 FAX 7994-345
 支店 7994-224
 支店 7994-233
 支店 7994-244
 支店 792-3500
 支店 7994-488
 支店 7994-199
 支店 7994-500
 支店 7994-200
 支店 7994-211
 支店 7994-222

